

기부금 운영규정

제	정	2007. 08. 10
개	정	2008. 11. 24
개	정	2010. 01. 06
개	정	2016. 11. 08
개	정	2019. 03. 28
개	정	2022. 11.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부 단체나 개인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이라 함은 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순수기부금이라 함은 지원조건이 없는 순수한 기부금을 말한다.
3. 조건부기부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을 지정한 기부금을 말한다.
4. 후원금이라 함은 재단 후원회에서 기부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5. 기부자라 함은 재단에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기부하는 자를 말한다.
6. 삭제 <2016.11.8.>

제3조(기부금의 종류) 재단으로 기부하는 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순수기부금
2. 조건부기부금
3. 후원금

제4조(기부신청) 재단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금액 또는 기부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법인명 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3. 조건부기부금일 경우에는 조건의 명기

제5조(기부금 채납 결정 및 통지) ①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는 기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부금 채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각 기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② 대표이사는 기부금 채납 여부 결정시 조건부기부금의 조건이 재단 사업목적에 합당한지 여부와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기부금의 채납여부를 결정한다. < 개정 2010.1.6.>



③ 조건부기부금 수혜자는 사업 종료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된 기부금은 기부약정서에 의거하여 재단의 처분에 따르거나 기부자에 의하여 기부 잔액 처리 방법이 별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6조(기부금의 관리 및 처리) ① 기부금의 관리는 회계담당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6.11.8.>

② 기부금은 재단 기부금 세입으로 수납한다. <개정 2019.3.28.>

③ 삭제 <2019.3.28.>

④ 기부금을 채납하였을 때는 국세청 기부금명세서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조건부기부금에 의한 사업의 조정 지원) ① 대표이사는 조건부기부금에 의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 효과상 그 금액 또는 사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6.>

② 대표이사는 기부자가 제1항에 의한 금액 또는 사업 내용의 조정을 동의할 경우에만 한하여 조건부 기부금을 채납한다. <개정 2010.1.6.>

③ 수납된 조건부기부금 중 사업 종료 후 잔액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기부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순수기부금으로 채납할 수 있다. 단, 기부자가 기부신청 시 기부금 잔액 처리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조건부기부금 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등) 조건부기부금은 사업수행상황과 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서식에 의거하여 기부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결산 및 보고) 사업연도 내 발생한 모든 기부금 관리 및 운영내역은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결산보고에 포함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제1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부금의 관리 및 처리에 있어서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8.11.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1.6., 2022.11.21.>

기부약정서

(제4조 관련)

1. 기부 약정금 : 원정(W)
2. 기부조건(기부 조건 및 채납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 :
3. 기부예정일자 : 년 월 일

위와 같이 기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귀 재단의 기부금 및 협찬금관리 운영규정 제8조 규정에 따라 조건부 기부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 효과상 그 금액과 지급방법 또는 사업내용에 대한 귀 재단의 조정과 기부금액의 관리 기간 중 발생된 이자에 대한 귀 재단의 처분에 동의합니다.

본 기부자와 기부금 수혜자는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주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

기 부 자(성명 또는 법인명) : (인)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